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8 선고 2022가단1450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권

피 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조

변 론 종 결 2023. 2. 1.

판 결 선 고 2023. 3.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0분의 9 지분에 관하여 2021. 3. 1. 체결된 이혼에

다른 재산분할 계약은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주식회사 F의 감사, 원고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원고 C은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E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나. E의 불법행위 및 형사판결

E은 주식회사 F로부터 113,280,000원, 주식회사 G로부터 181,476,000원, 주식회사 H로부터
323,408,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459호로 공소제기 되어
2022. 7. 14.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사재판에서 원고들이 배상신청을
하여(2022초기248, 249, 250) 같은 날 ‘E은 주식회사 F에게 113,280,000원, 주식회사 G에게
181,476,000원, 주식회사 H에게 323,408,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하 ‘이 사건
배상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E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22노4197호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 피고와 E의 이혼

1) 피고는 2020. 8. 27. E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제기하였는데 2020. 11. 9. “피고와 E은
이혼한다. 피고와 E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피고와 E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청구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부제소합의).”는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2) 이 사건 조정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가 9/10 지분을, I가 1/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E이 부인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와 이혼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피고 지분의 1/2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을 하였다. 피고는 E으로부터 과도한 재산분할을 받았다. 한편 원고들은 E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 등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고, E은 이 사건 재산분할 조정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와 E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계약은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들이 E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들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가 이 사건 배상명령에 기한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따라서 원고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가정적 판단)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 가정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 1) 이 사건 부동산이 E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2) E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참조), 설령 E이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위와 같은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조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별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송파구 J에 있는 K아파트 L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M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트리트지붕 3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571.87㎡
2층	532.6㎡
3층	532.6㎡
4층	532.6㎡
5층	532.6㎡
6층	532.6㎡
7층	532.6㎡
8층	532.6㎡
9층	532.6㎡

10층	532.6㎡
11층	532.6㎡
12층	532.6㎡
13층	532.6㎡
14층	532.6㎡
15층	532.6㎡
16층	532.6㎡
17층	532.6㎡
18층	532.6㎡
19층	532.6㎡
20층	532.6㎡
21층	532.6㎡
22층	532.6㎡
23층	532.6㎡
24층	532.6㎡
25층	532.6㎡
26층	532.6㎡
27층	532.6㎡
28층	532.6㎡
29층	532.6㎡
30층	532.6㎡

31층	532.6㎡
32층	532.6㎡
33층	532.6㎡
34층	532.6㎡
35층	403.5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번호 : N

건물 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110.6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서울특별시 송파구 J 대 346570.4㎡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 346570.4분의 49.1122. 끝.

